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해식 · 한민수

박희승 · 강선우 · 이연희

김주영 • 민형배 • 김기표

박홍근 • 고민정 • 진성준

박수현 • 복기왕 • 김한규

윤건영 · 송재봉 · 김영배

정태호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(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을 임명할 때 임원 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,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 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,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,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

음.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, 지방 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 춘 사례도 있음.

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,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,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(안 제28조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본문 중 "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"를 "기관장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임원은 1년을 단위로"를 "기관장 및 이사와 감사는 1년에 한해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

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임기) ① 제25조 및 제26	제28조(임기) ①
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<u>기관</u>	<u>기관</u>
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	<u>장 및</u>
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	
한다. 다만, 제6조의 규정에 따	
라 공기업・준정부기관으로 지	
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	
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	
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, 그 임	
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	
에 따른다.	,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
	제1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 단
	서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은 임
	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
	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
	것으로 본다.
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<u>임원</u>	<u>③</u> <u>기관장</u>
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	및 이사와 감사는 1년에 한해
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	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	
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	
부를 결정한다.	
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	<u>④</u> 제3항
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	
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	
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	,
<u>④</u> <u>제2항</u> 의 규정에 따라 기관	<u>⑤</u> 제3항
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	
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	
다시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	
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	
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	
아니한다.	

<u>⑤</u> (생 략)
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